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3302호

나. 발 의 자 : 아이수루 의원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10월 20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
II. 제안이유

-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명확한 국제교류협력 대상의 선정 및 검토, 사후관리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

III. 주요내용

- 국제교류협력의 정의를 확대함 (안 제2조)
-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교육감의 역할을 규정함 (안 제6조)

○ 국제교류협력 대상 검토 및 선정을 규정함 (안 제6조2)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별도 없음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
3. 입법예고 : 2025. 10. 28. ~ 11. 1.(의견: 없음)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아이수루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02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의 정의를 확대하고,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교육감 역할 강화, 사업 대상 검토 및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1) 정의(안 제2조)에 대한 검토

- 안 제2조제2호는 ‘국제교류협력’의 정의 중 그 범위를 ‘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’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.

[표-1] ‘국제교류협력’ 정의 개정 전후 비교

현행 제2조제2호	안 제2조제2호
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체결, 국제행사의 유치·개최 등의 활동	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체결, <u>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</u> , 국제행사의 유치·개최 등의 활동

- 현행 ‘국제교류협력’의 정의가 자매결연, 업무협약, 국제행사 등과 같이 비교적 관계·형식 중심의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, 개정안은 여기에 ‘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’을 포함함으로써 교육 내용 중심의 협력으로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이는 현행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¹⁾의 내용을 고려할 때, 그 범위를 ‘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’ 까지 확장하는 것은 정의의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2) 국제교류협력 사업(안 제6조)에 대한 검토

○ 안 제6조는 교육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(제2항), 예산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(제3항).

○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관리·지원하는 것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항으로, 안 제2항과 제3항의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

○ 그러나 현행 조례 제4조는 교육감에게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시책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국제교류협력은 그 계획 및 사업을 총괄한다는 의미를 고려했을 때, 안 제6조제2항 및 안 제3항의 규정은 중복 규정으로서 입법구조상 비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.

○ 따라서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더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1) 제6조(국제교류협력 사업)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
2.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교육 및 홍보사업
3.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
4. 해외 교육행정기관과의 수업 교류사업
5. 선진기술의 습득 또는 전수, 협동 프로그램 등 봉사교류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업
6. 교환학생, 어학연수 등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
7.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) 국제교류협력 대상 검토 및 선정(안 제6조2)에 대한 검토

- 안 제6조의2는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며, 그 기준을 각 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.
- 국제교류협력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고, 지방자치단체마다 규모·특성·재정 상태·정책 우선순위가 상이하므로, 「교육기본법」 제29조(국제교육)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0장(국제교류·협력)은 포괄적인 근거만 규정하고,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
- 관련하여 안 제6조의2 각 호는 상호협력 가능성(제1호, 제2호, 제4호), 교류기반 여건(제3호, 제5호), 교류의 실익 및 효과(제6호)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, 이는 일부 지자체 조례의 기준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기준 설정은 임의적 결정을 방지해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, 장기적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, 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높여 시민·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[표-2] 타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사업 선정 기준(일부 발췌)

자치단체명	조례명	국제교류협력 사업 선정 기준
서울특별시 교육청	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'개정조례안'	1. 상호 신뢰성 2.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. 면적, 인구 및 행정·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 여건 4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5. 역사적·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.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실익
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	1. 수도 또는 수도에 준하는 도시로 시의 국제적 위상과의 유사성 2. 면적, 인구 및 행·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3. 산업,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4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. 역사적,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.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

자치단체명	조례명	국제교류협력 사업 선정 기준
경기도	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면적, 인구 및 행정·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. 산업,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.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. 역사적,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
대전광역시 교육청	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호 신뢰성 2.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. 면적, 인구 및 행정·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여건 4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. 역사적,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.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
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	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연계성 2. 면적, 인구 및 행정·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3. 교육, 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4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.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6. 역사적·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7. 그 밖에 외교적 특수성 등

○ 따라서 안 제6조의2와 같이 국제교류협력 사업 선정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공공성·합리성·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.

○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.(행정관리담당관-13602, 2025.10.30.)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김명신(2180-8269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관계 법령

교육기본법

[시행 2025. 7. 22.] [법률 제20663호, 2025. 1. 21., 일부개정]

- 제29조(국제교육)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·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5. 10. 2.] [법률 제20870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제10장 국제교류·협력

제193조(지방자치단체의 역할)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·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·협력, 통상·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, 민간기관, 국제기구(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·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,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,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94조(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)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·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195조(해외사무소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·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